

2019년 5월 18일 시행

능 력 검 정 시 험

【등기사무직렬】

<제 1 교시>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법(40문), 민사소송법(40문)
------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의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9. 5. 20.(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9. 5. 20.(월) 10:00 ~ 2019. 5. 22.(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9. 5. 31.(금)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 1】 신의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④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고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③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고용의 약정기간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문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의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乙이 다른 변호사 丙에게 특정 기일의 법정출석 내지 소송수행 등을 맡기는 것은 복대리로서 유효하고, 丙의 복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인 甲에게 미친다.
- ② 甲이 乙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乙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甲과 乙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乙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③ 甲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의 허락없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는 것은 자기계약으로서 금지된다.
- ④ 甲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乙로 하였으나 甲이 乙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 丙이 甲을 乙인 줄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문 4】 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에 의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며,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다.
- ③ 한정후견개시심판에 의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며, 한정후견개시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다.
- ④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문 5】 근로계약관계와 비진의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 ②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③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 ④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영업양수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6】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혼인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②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③ 혼인무효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그 출생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하였더라도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④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고,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는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문 7】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참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차량 등의 3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위 충돌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중 1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③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가 수혈받은 경우, 수혈에 필요한 수혈액을 채혈·조작·보존·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대한적십자사와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 ④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문 8】 구분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은 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②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그 건물이 객관적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③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④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 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9】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되었다면,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이기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미치고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문10】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 ② 경계계약의 경우 구채무에 관한 저당권 등이 신채무에 이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구채무가 소멸함이 원칙인 경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특약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 ③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문11】 민법 제366조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 ②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어서 아직 독립된 건물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④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이라 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을 전대하여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주택임차인과는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데, 상가건물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④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문13】 친생자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생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③ 부 또는 모가 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문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 유언은 의사표시가 성립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이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문15】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기 이전 상태에서는 각 당사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대금지급청구 등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계약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배하여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은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 ③ 매수인은 이러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목적토지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는 있지만,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④ 허가 받기 전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문16】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이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담보채무에 속하는 지연이자(지연배상)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③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문17】 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고,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고, 이러한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또는 그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청구권인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승계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④ 소송물이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청구권인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승계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18】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위 등기명의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③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유류분의 비율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문19】 증여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④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문20】 변제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자대위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변제 또는 담보권 실행 등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될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을 대위변제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대위변제자의 구상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인 점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인 채권양도와 구별되며, 원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피대위권리의 주체인 채무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구별된다.
- ③ 대위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구상권 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기타의 권리도 취득하므로 청구권의 경합이 생기게 된다.
- ④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문21】 상린관계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토지소유권을 확장 또는 제한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토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하나(단, 생활방해 금지의 경우에는 인접성을 요하지 않음),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등기하여야 하며 요역지와 승역지가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2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며,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특정 행위에 대한 대리인, 지배인, 사원총회, 감사 등은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인 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35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문2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인 것이 원칙이다.
-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최고 없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담보책임을 배제·감경·가중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문24】 친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④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문25】 부당이득제도의 예외로서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한 비채변제의 경우 변제자는 원칙적으로 급부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은 일정한 비채변제의 경우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②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는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급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④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문26】 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②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는 물론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시효완성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문27】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사회생활규범으로서 강행되기에 이른 것으로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대통령령인 구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관습법이 배치될 경우,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 ③ 관습법과 달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 ④ 관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등이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는 사도통행권, 온천권 등이 있다.

【문2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정지조건부채권은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가족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④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문29】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보증채무에 있어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문30】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②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상대방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문31】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목적물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③ 채무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한다.
- ④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문32】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뒤에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 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③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과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매각결과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도 없다.
- ④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문33】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교회재산 총유권자의 일부인 잔류교인들로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총유권자들로서 이루어진 교회에 대하여 교회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고, 교회 건물의 등기명의가 한쪽 교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서 유효하다.
- ③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 ④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문34】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3자가 채무자와 면책적채무인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면책적채무인수의 경우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문35】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양도담보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될 수 없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짐으로써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양도담보권자는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목적물이 채권 기타의 재산권인 경우에는 그 권리에 전에 필요한 요건 및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3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예외적으로도 그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된다.
- ③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 ④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문37】불법행위에서 가해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②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것을 알면서 채무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채무자의 행위가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문38】권리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토지의 정착물에는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등이 있으며, 독립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
-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④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임과 같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따라서 임대 중인 건물이 매매된 경우에 그 차임은 임대인들, 즉 그 건물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 소유기간 일수의 비율로 귀속한다.

【문39】 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자채권을 기본적 이자채권,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을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 ②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 채무자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약정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문40】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선관주의의무는 이행기가 지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부담한다.
- ③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 ④ 채권성립 후에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급부가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급부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 1】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급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에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와 같이 청구취지에 각 피고의 상호관계와 각자의 의무의 범위를 부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중첩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분할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당사자가 될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관, 규약,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보정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하고, 보정기간 경과 후에 각하명령 전에 보정하였더라도 그 흠이 보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한다.
- ④ 피고에게 소장부분이 송달된 후에 인지보정명령을 발한 경우, 원고가 그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2】 법원사무관등의 공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증인이 행하는 공증사무가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작성 또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법원사무관등의 공증사무는 법원이 행하는 절차에서 이루어진 법원 및 소송관계인의 행위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인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이 공증한 사항이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고 서면에 의해 일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면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통상의 공문서보다 높은 신빙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소송당사자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의하여 부여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교부신청이 들어온 경우, 증인신문조서가 변론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도 증인신문조서만의 등본을 만들어 교부한다.

【문 3】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 ②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상소심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의한다.
- ③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사물관할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일반 단독사건으로 재배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바뀌었더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 4】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달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 그 치유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송달을 실시하거나 기일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흠은 이에 대한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 이러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만일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 상호간 또는 집주인과 하숙생 사이에서는, 인장을 교부하거나 우편물 수령의 위임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문 5】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나 이행의 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필요 없고, 본소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반소청구도 본소와 운명을 같이하여 소멸된다.
- ③ 반소장에도 소장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하나,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양 소송물이 일부만 중첩되는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반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④ 반소가 적법하면 병합심리를 하여 1개의 전부판결로써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이 번잡하게 되거나 지연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리심리를 하여 따로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각각 일부판결을 할 수도 있다.

【문 6】 자백과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고, 문서에 적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 ② 소송요건 등의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자백간주의 대상은 될 수 있다.
- ③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문 7】 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나, 이는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때에 한한다. 만일 소송물인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이 되지 않거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 ②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에게만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 그 당사자의 절차만 중단되는데 반하여, 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절차가 중단된다.
- ③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수계신청은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을 새로운 당사자 또는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수계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 신청인이 그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는 대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단을 잘못 내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진정 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문 8】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지만, 문서제출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 전에 제3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③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후 바로 한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
- ④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곧바로 증거자료가 되므로 별도로 서증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의 송달이 무효인 때에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그 송달을 받을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령 허위의 피고 주소로 제1심판결이 송달된 때에는 설령 피고가 그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항소기간은 진행될 수 없다.
- ② 항소장이 제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 송부된 때에는 당사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1심법원 도착시가 아니라 항소심법원 접수시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된다.
- ③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 ④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인이 위 보정명령에 불응하더라도 항소장은 각하할 수 없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금전의 인도, 반환시기의 도래이고, 이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 ②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자의 약정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다만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고는 반환시기 및 그 도과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익일부터,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최고 및 상당기간의 말일이 도과한 때부터,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④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다. 대주는 특약이 없어도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어도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가 가능하다.

【문11】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②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고, 이는 수단인 청구의 값이 주된 청구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소가 제기되는 경우, 소장 접수단계에서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5,000만 원을 잠정적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이다.

【문12】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정본을 송달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변론준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 ③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 ④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결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문13】 승계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의 승계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목적물의 양도 등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 결과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새 당사자로서 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소송물의 양도에는 매매·증여·채권양도 등 임의처분은 물론 민사집행법상 매각, 채권전부명령 등 법률상의 이전도 포함되고 승계취득이든 원시취득이든 관계 없다.
- ③ 승계참가의 신청은 소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에 따라 심리한 결과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승계참가의 형식은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지만 소송의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피참가인이 양도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권리승계참가인이 피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삼면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공동소송에 준하여 심리한다.

【문14】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건기록이 법원의 화재·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소송관계인이 6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대하여 소장·신청서·상소장 등의 부분 및 사건계속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신청·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③ 사건기록이 재난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 그 확인 즉시 상급법원을 통하여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을 새로 조제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법원의 잘못 등으로 그 소송서류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서류의 제출로 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문15】 증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의 신청은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 ②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증거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증거신청을 한 당사자는 통상의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증거의 채부 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이므로 언제든지 취소·변경할 수 있다.

【문16】 다음 중 민사사건에 속하지 않는 사건 유형은?

- 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② 유언의 무효
- ③ 유류분반환청구사건
- ④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문17】 보증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비용자관 반드시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해 사무, 사업의 보조,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을 말한다.
- ②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장소에서의 보증송달에서 부부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송달을 받을 동거인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해서는 보증송달을 할 수 없다.
- ④ 보증송달이 적법하면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었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지만 보증송달 후 수령대행인으로부터 본인이 장기간 부재임을 소명하여 신고해 온 경우는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18】 서증의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②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 ③ 당사자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려 할 경우 접수담당자는 가급적 이를 원본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증거목록의 서증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문서의 기재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혀야 한다.

【문19】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 ②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는데도 이를 간파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 ③ 판결선고 직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이와 동시에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소취하와 함께 소송이 종료되므로 판결정본의 송달은 필요 없다.
- ④ 판결정본은 보조참가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문20】 판결·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판결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고 결정은 개개 법관(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
- ② 판결은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거친 후 법관이 서명날인한 판결원본을 작성하여 선고 기일에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③ 결정은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또는 서면심리와 심문을 거친 후 상당한 방법으로 재판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결정은 결정원본의 작성이 필수적이 아니고 조서에 기재하여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21】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조참가인은 독자적인 소송관여권이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면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②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거나, 피참가인이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상소를 취하한 뒤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③ 보조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피참가인은 결석 하더라도 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 ④ 보조참가인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보조참가신청을 취할 수 있고, 참가신청을 취하함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문22】 사실조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증인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한 증거방법으로 이해되고 있고 실무에서는 사실조회라고 부른다.
- ② 조사할 내용이 촉탁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도 사실조회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 ③ 회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는 없으나, 당해 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닌 정식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하려면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 ④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는 관련기관이 정한 제출명령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2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구조는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허용되고,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사건은 소송사건과 그 목적 및 절차구조를 달리하므로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자금능력의 부족에 관하여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③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일반승계·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소송승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24】 송달료의 예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송달료가 없어 소장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할 수 없다.
- ③ 소장 접수시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아 보정명령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송달하지 않고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소송계속 중에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문25】 진정성립의 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 이 경우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공문서의 위조·변조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② 공증인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작성한 공정증서는 성질상 공문서와 같은 추정력을 가진다.
- ③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성립의 진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형식상 존재하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 ④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문26】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③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한 경우에도 미친다.

【문27】 사건기록의 편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원고측 공동소송참가는 주된 소송의 기록에 합철한다.
- ② 제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 소송기록의 보관 또는 보존법원에 그 송부를 촉탁하여 송부되어 온 제심 전 기록을 제심기록에 첨철하여야 하며, 제심소송이 종료되면 양 기록은 제1심법원에서 함께 보존한다.
- ③ 문건으로 입력할 서류는 따로 사건이 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진행 중인 관계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하고,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문28】 접수서류의 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수서류는 접수인을 날인함으로써 수리된다.
- ② 당직접수를 한 경우 각종 기간의 준수 여부나 시효중단 여부는 주무부서 접수시가 아닌 당직접수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소송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변호사·법무사 등이 제출한 소송서류로서 그 서류 자체로 제출자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에도 봉투를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④ 기일접수의 경우 주무부서 접수인을 다시 날인할 필요는 없다.

【문29】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시항고나 특별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판결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은 항고에 의하여야 한다.
- ③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하는 항고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1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도 재항고이다.
- ④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나 항고기간이 지나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에 의해 원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문30】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 ②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등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서면에 첨부된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상소심에서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해태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문31】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또는 모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공유건물의 철거청구는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 지분권의 한도 내에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③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유관계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이다.
- ④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취하 등은 공동소송인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문32】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와 국가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양 청구 중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 ③ 대지인도를 구하기 위해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양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④ 병합청구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서 합산·흡수 등의 원칙은 원고가 1개의 소장에 의해 원시적으로 여러 청구를 병합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설령 병합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더라도 별개의 소장으로 제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33】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이 집행증서인 경우 토지관할은 채무자인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관할이다.
- ②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모든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
-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한다.
- ④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이므로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해당한다.

【문34】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의 취하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확정시키는 데 반하여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실효하게 한다.
- ②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대방이 당해 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취하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때 또는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때에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한다.

【문35】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 ② 제1심에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된다.
- ③ 선정당사자는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즉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제기와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선정자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신청(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재판, 증거조사, 송달 등의 일정한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
- ② 공격방어방법은 주장과 증거신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주장에는 법규의 존부·내용·해석에 관한 의견진술을 포함하는 법률상 주장과 구체적인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진술인 사실상 주장으로 구분된다.
- ③ 사실상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는 부인, 부지, 자백, 침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부지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침묵과 마찬가지로 부인으로 추정된다.
- ④ 상대방의 위 4가지 답변태도(부인, 부지, 자백, 침묵)는 그 효과에 따라 ‘부인’과 ‘자백’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문37】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은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사건의 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 ② 전속관할을 위반한 지급명령신청은 각하해야 하지만, 법원이 전속관할의 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명령을 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지급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 ③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어 채권자에게 인지보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면 독촉절차는 실효되므로,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본안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 ④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문38】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론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복사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송기록 열람·복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부결정 권한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있다.
- ④ 2015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확정 민사판결서를 인터넷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이는 행정·특허·가사사건의 판결서에도 적용된다.

【문39】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이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복수의 피고 중 일부만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후속절차의 진행을 일단 유보한 후, 다투는 피고에 대해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무변론판결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 ③ 피고가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을 촉구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④ 형성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문40】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은 20년간 자주·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다.
- ② 점유의 개시시점은 요건사실이므로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된다.
- ③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에게 국유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의 중단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오직 시효이익의 포기가 문제된다.

2019년 5월 18일 시행

능 력 검 정 시 험

【등기사무직렬】

<제 2 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민사집행법(20문)
①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의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9. 5. 20.(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9. 5. 20.(월) 10:00 ~ 2019. 5. 22.(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9. 5. 31.(금)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항고절차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③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별도의 집행정지처분이 필요하다.
- ④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의 기재방법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문 3】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②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며,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을 표시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해 변제충당 또는 추심한다.
- ④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문 4】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②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의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다.
- ③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의 발송 전에 진술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 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상 개별매각이 원칙이므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한 바가 없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매각하는 것이다.
- ②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매각하여야 한다.
- ③ 일괄매각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사유가 있는 부동산만 매각을 불허가 한다.
- ④ 일괄매각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문 6】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둬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공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공탁하여야 한다.
- ②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지나지 않았더라도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④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문 7】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하지 않고 임차인의 점유보조자 즉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 ②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 ③ 근저당권설정 후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증액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임차인은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도 주택인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 수 있다.

【문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각종 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 ②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상 그 집행개시 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미 진행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다.
- ③ 임금채권 등 채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
- ④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 9】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 ② 법원이 대표이사직에 대해서만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외에 이사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 ③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기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 권한을 갖지 못한다.
- ④ 채단법인의 대표자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해임이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10】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②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③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 ④ 추심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로 인해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문11】배당절차와 관련된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 필요는 없다.
- ② 집행공탁을 하면서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③ 혼합공탁이 유효하려면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 ④ 공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문12】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및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등기의 처리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 ②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전세권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취득하므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촉탁한다.

【문13】매각물건명세서 및 그 기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그 전세권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최선순위 가압류의 등기일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이다.
-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경매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 ④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매각에 의하여 말소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유치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문14】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고 의사에 반하여 투자회수를 강요당하는 우선채권자와 채무자 및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②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도 1주 내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도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 ④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자는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에 한하고, 채무자와 소유자는 항고할 수 없다.

【문15】 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보전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 ② 위 두 요건의 심리순서는 먼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심리하여 일응 그 존재가 소명되면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실무상으로도 통상 그와 같은 순서에 따르고 있고, 판례도 같다.
- ③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는 그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다.
- ④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문16】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공탁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나, 변제공탁의 성질은 가지지 않는다.
- ④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17】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 ② 법원사무관등이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 ③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문1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는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에 하여야 하고, 최초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의 날로 정하되, 연월일만 특정하면 된다.
- ② 위법공고를 간과하고 집행을 속행하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며,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의 누락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추완항고가 허용될 수 있다.
- ④ 매각기일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로 발송송달하면 되고, 이때의 주소는 집행기록상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한다.

【문19】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부동산가압류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결정이 등기된 경우, 그 가압류결정은 당연히무효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효인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보전신청 후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은 당연히무효로 된다.
- ③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르고 가압류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이다.
- ④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

【문20】 집행문부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집행문부여기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집행문부여의 소 승소판결은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 청구권의 형성 외에 실체적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기판력도 발생한다.
- ④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2019년 5월 18일 시행

능 력 검 정 시 험

【등기사무직렬】

<제 3 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부동산등기법(60문) 상업등기법(40문)
①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의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9. 5. 20.(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9. 5. 20.(월) 10:00 ~ 2019. 5. 22.(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9. 5. 31.(금)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 1】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한, 이하 [문60]까지 같음)

- ①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다면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그 연월일은 '결정확정일'로 한다.
- 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다면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화해'로, 그 연월일은 '조서기재일'로 한다.
- ③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한다.
- ④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취소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으면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한다.

【문 2】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 ②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전부에 대하여는 열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수용기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수용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도 부동산등기규칙 제20조 제3항의 삭제인가 또는 제25조 제3항의 폐기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라도 그 중 특정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등기는 지적소관청이 촉탁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등기소에 직접 위 특례법에 따른 분할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④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관청이 공유토지의 분할등기를 촉탁할 때에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문 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② 국내법인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③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문 5】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 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가압류등기를 촉탁하면서 착오로 채권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재의 경정을 촉탁할 수 있다.
- ③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관이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등기관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문 6】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결정 또는 처분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④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관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할 수 없다.

【문 7】 등기부의 기록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의 성명을 기록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록한다.
- ② 부동산표시의 소재지를 기록할 때에는 행정구역 명칭 그 대로 전부 기록하여야 하는바,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기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등을 '서울', '충남' 등으로 약기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m²를 사용한다.
- ④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록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기록한다.

【문 8】 등기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정등기는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한다.
- ② 말소회복등기는 기존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기존등기의 효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 기존등기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 ③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는 등기로서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 ④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문 9】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율로 산정한 토지면적을 계산하고,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토지를 동일인과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 거래 토지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④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0】 지상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등기기록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수목의 소유로 하고,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④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로 토지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11】 다음의 등기신청 중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것은?

- 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및 해당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③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해당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④ 같은 목적과 원인으로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1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하는데, 등기목적은 ‘몰수보전’, 등기원인으로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연월일을, 등기관리자로는 ‘국’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몰수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 하하여야 한다.
- ③ 추정보전등기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목적은 ‘가압류’로 하여 촉탁하되, 검사의 집행명령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으로 기재한다.
- ④ 몰수의 등기는 검사가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촉탁하는데, 몰수보전의 등기가 마쳐진 권리에 대하여 몰수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에 저촉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13】 질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는 그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부동산등기법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문14】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에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매각 또는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관공서가 전자촉탁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이라 하더라도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한다.

【문15】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지를 지상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문16】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합유자 중 1인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도 할 수 없다.
- ③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문17】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된다.
- ②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이혼이 이루어진 때에 발생하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신탁등기를 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18】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19】 상속등기신청과 관련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문20】 등기신청을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할 때의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21】 가압류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선정당사자만 기록할 수 있다.
- ② 가압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무기등기의 방법으로 의한다.
- ③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무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중이라면 집행법원의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문22】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 ③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직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한다.
- ④ 건축사법상 건축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가 될 수 없다.

【문23】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 열거한 것은?

- ① 저당권부질권, 공동전세권, 주위토지통행권
- ② 채권담보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 ③ 근저당권부질권, 부동산점유권, 분묘기지권
- ④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부동산유치권

【문24】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지역권설정등기의 등기관리자가 될 수 있다.
- ②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되므로 지역권의 이전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 ③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토지를 일괄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해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5】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③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과 같이 가변적인 비율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 ④ 토지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문26】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원인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리자가 판결을 얻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③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27】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그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그 대상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공시제한하지 않는다.
- ② 대상등기명의인(말소사항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공시제한하지 않는다.
- ③ 문자입력방식(에로스-텍스트형태)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기부는 공시제한하지 않는다.
- ④ 공용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이 그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공시제한하지 않는다.

【문28】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미등기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있다.

【문29】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②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양도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30】다음 중 하천법상 하천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은?

- ① 지상권 ② 지역권 ③ 전세권 ④ 저당권

【문31】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수익자인 경우로서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면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탁원부상의 종전 수익자를 새로운 수익자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③ 신탁을 원인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갑은 현재 유효한 소유명의인이 아니므로 원신탁의 신탁원부 기록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32】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 ②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숙박시설 38.7 m²’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캐빈하우스)이 공장에서 완제품 또는 부분제품을 제작하여 건축현장으로 운송한 후 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상·하수도 및 전선관 설비와 함께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으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부동산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문3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북한주민이 남한 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법무부장관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북한주민의 상속, 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소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문34】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일부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의 목적이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는 그 판결에 따로 분필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으면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별로 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공유자의 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 0분의 0 중 일부(0분의 0)이전’으로 기록하되, 괄호 안의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록한다.

【문35】 토지의 중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뒤에 개설된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에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때에는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②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에 개설된 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③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④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비록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을 제공하지 않고도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문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전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② 새로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제한의 등기축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근저당권이 새로운 건물과 토지에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및 새로운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므로 시행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되지 않는다.
- ④ 건축물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처분제한의 등기가 존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선순위의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등기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그 선순위의 처분제한의 등기, 이전고시를 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37】 등기신청사건의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이 2명 이상인 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사건의 배당을 무작위 균등 배당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등기신청사건이 등기관에게 배당된 이후에 담당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재배당할 수 있다.
- ③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을 제외한 다른 등기관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등기신청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문38】 건물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물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③ 등기관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항상 주등기로 실행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에 관할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문39】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처분공고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③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후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지만,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수리하여야 한다.
- ④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 원칙적으로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하나, 사업지역을 수개의 구로 나눈 경우에는 각 구마다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문40】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산간주등기는 되어 있지만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은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면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시에 제출할 인감증명은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41】 부동산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가 없어(법 제51조 단서) 공증을 받는 경우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면이 아닌 것은?

- ① 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 ② 등기의무자 등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 ③ 등기의무자 등이 인감을 날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서
- ④ 등기의무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과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

【문42】 등기신청서 부분 및 기타 장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분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신청인의 성명·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등기신청서나 그 부속서류는 등기신청의 진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법원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으면 송부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대상이 된다.
- ④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의 전부·일부 또는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문43】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②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이 있으면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할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 취득자는 기존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44】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권리자는 법원에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한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45】대위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 피보전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이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대위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등기상대방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공동신청주의상 허용되지 않으나 등기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공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와 같이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문46】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형성판결,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 ③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미등기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47】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매의 특약은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나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 ②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는 별개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 ③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④ 환매특약의 등기 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환매권자와 소멸될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문48】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인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 ② 부인등기가 마쳐진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신청은 각하할 수 없다.
- ③ 회생절차상 부인등기는 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④ 관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회생법원은 부인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문49】부동산등기소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관할등기소 지정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며, 그 등기소에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즉시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함이 원칙이며, 관할위반의 등기는 관할의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④ 이미 등기된 건물이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나중에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관할의 지정을 받을 필요 없이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관할한다.

【문50】등기필정보의 작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이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갑’ 단독소유를 ‘갑, 을’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관공서가 등기관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 ④ 등기관이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마쳤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위하여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51】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전세권의 일부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전세권의 목적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라도 상관없지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전세권은 용역물권이므로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하며,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토지 전세권과 달리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52】다음의 판결 중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④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문53】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의 표제부에 있는 토지등기기록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등기기록의 전체가 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기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 ③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후 그 구분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도 최후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문54】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②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55】경매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경매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변동사항이 생겼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가입의 말소촉탁 외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해야 할 등기이다.
- ④ 주택임차권은 그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말소 대상이 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56】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 ②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그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④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공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문57】협의분할(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분할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 ③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문58】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의 경우에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되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등기원인증서로서 매매계약서가 아닌 판결정본이 제출되었다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 ④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문59】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할 때에 일정한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인 경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②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위임장
-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을 등기관리자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의 매매계약서
- ④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의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문60】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을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갑 단독소유를 갑·을 공동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의 일부지분이 이전되어야 할 것이 착오로 신청서에 소유권 전부이전으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소유권의 전부이전을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 ④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문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한,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한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아니한 정관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신문을 정할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OO신문에 공고한다'와 같이 발행지를 특정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만약 발행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설립시에 작성한 원시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회사가 성립한 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결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생기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등기 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이 부적법한 신청을 간과하여 등기를 실행한 경우라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기록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④ 등기관은 이미 각하결정을 한 이상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도 이의신청이 있는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문 3】 합병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은 소멸하는 회사의 본점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②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에는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일체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을 하는 경우는 물론,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 ④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문 4】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업무집행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여야 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없다.
- ②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때, 해임대상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도 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개명을 한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소규모 주식회사가 2명의 이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문 5】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
- ② 분할의 승인을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분할하게 되면 회사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게 되므로 단순분할의 경우에도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 6】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회에서 자본금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신주배정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나 공인회계사 등 감사인의 확인서가 이에 해당한다.
- ③ 정관으로 자본금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자본금전입의 결의는 보통결의에 의한다.
- ④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 그 초과액은 자본금에 전입할 수 없다.

【문 7】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등기기록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폐쇄된 등기용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쇄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
- ③ 열람의 연장으로써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열람은 반드시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열람을 지켜보도록 할 수 없다.

【문 8】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명회사의 설립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기할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합명회사의 원시정관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주식회사와 달리 현물출자시에도 법원에 의한 검사절차가 필요 없다.

【문 9】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는 반드시 본점의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에서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에는 이사 자신이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사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다.

【문10】등기실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은 실체관계의 효력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고 심사하여야 하지만 실체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거나 심문할 수 없고 현장 확인이나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없으며, 등기부 및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이외의 자료를 심사자료로 할 수 없다.
- ② 등기신청의 취하는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에 대한 취하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이 신청서류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권고함은 바람직하지만,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11】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을 둔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
- ③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권한이다.
- ④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도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문12】다음 중 등기기록의 폐쇄와 개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 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등기
- ②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
-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등기
- ④ 신설합병의 등기

【문13】등기신청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 ②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본점의 소재지 등과 임원 등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④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은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도 동시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문14】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의 등기는 외국회사의 본국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는 할 수 없다.
- ③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하는 경우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청산개시명령 없이 외국회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등의 청산관련 등기를 할 수 없다.

【문15】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전자신청에 앞서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전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반드시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16】합자조합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 ② 합자조합은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갖지만, 설립등기에 의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 기 업체가 된다.
- ③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④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그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만 등기한다.

【문17】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그 취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 ③ 외국인을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성명은 원지음을 한글로 등기하되 그 로마자를 병기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그 대신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 ④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피선임자인 주주는 자신을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8】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② 실권예고부 청약최고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 없이 감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에게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문19】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다.
- ②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③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는 경우, 그 중 2명의 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정관 규정에 따라 2명의 이사만 두고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다.

【문20】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또는 발기설립 시 주식청약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관을 제출하면 된다.
- ③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감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분이어야 한다.
- ④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하고,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21】다음 중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고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② 결손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
- ③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시 합병에 관한 승인
- ④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문22】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의 임기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③ 감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 ④ 회사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문23】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한다.
- ③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정관에 정하여진 소집지,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개최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는 원칙적으로 그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그 결의에 기초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문24】주식회사의 지점의 설치·이전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
-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할 때와 같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고,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하므로, 그 등기신청서에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문25】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②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 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예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상호가등기의 신청서 또는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신청서에는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등기관은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상호가등기의 본등기를 하지 않고 예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아직 가등기가 직권말소되기 전이라면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문26】 주식회사 임원의 퇴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사가 사임 또는 임기만료와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한다.
- ② 등기실무상 중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중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한 결과,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다가 나중에 후임자의 취임으로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상 퇴임일은 권리의무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을 등기한다.

【문27】 인감의 제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감의 제출과 인감의 개인신고는 물론 인감카드의 발급과 효력정지도 반드시 관할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 ③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않는다.
- ④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문28】 주식회사의 회사계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계속 결의와 동시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경우 회사계속 결의 전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는 당연히 그 권한이 소멸한다.
- ② 해산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던 해산 전의 이사가 회사계속으로 당연히 종전 이사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를 계속할 때는 반드시 새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때에는 잔여재산이 남아 있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 ④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소정의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그 정관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문29】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한다.
- 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이사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그 등기를 실행하면 되므로 지점소재지에서는 그 등기를 하지 않는다.
- ④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30】 상법 제416조의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 ②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등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실 납입하여야 하므로 신주인수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2명의 이사를 두고 있는 경우, 상법 제416조의 신주발행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문31】 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 ②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고,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 ④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음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 그 등기를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문32】 청산종결의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청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문33】 상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동일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할 때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와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 ④ 등기관이 판단을 잘못하여 동일상호가 등기되었다면 이때에는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나중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문34】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는 그 등기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상호의 등기나 상호의 가등기를 하면 그 등기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동일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는 배타적 효력이 인정된다.
- ④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사항이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 및 등기된 사항이 적법하다는 법률상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문35】 조직변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은 합병회사와 합자회사 상호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에 허용된다.
- ③ 특수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또는 상법상 회사를 특수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 ④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문36】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산을 선고받은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그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신청한다.
- ②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한데,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는 변경된 정관은 첨부할 필요가 없고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
- ③ 관할내 본점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 ④ 본점을 이전하면 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지만 인감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문37】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장은 보통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되나 정관에서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면 실제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
- ④ 주주총회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이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문38】 지배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는 그 성질상 지배인이 되지 못한다.
- ② 지배인선임등기 신청시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본점에 지점설치와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설치와 지배인선임등기에 관련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39】 전환사채의 발행과 그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 ② 전환사채 발행 등기는 분할납입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액이 납입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전환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와 함께 전환사채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40】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 ②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은 아니다.
- ③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각 사원은 사원의 의사결정시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④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2019년 5월 18일 시행

능 력 검 정 시 험

【법원사무직렬】

<제 1 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민법(40문), 민사소송법(50문)
①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의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9. 5. 20.(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9. 5. 20.(월) 10:00 ~ 2019. 5. 22.(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9. 5. 31.(금)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 1】 신의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④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고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③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고용의 약정기간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문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의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乙이 다른 변호사 丙에게 특정 기일의 법정출석 내지 소송수행 등을 맡기는 것은 복대리로서 유효하고, 丙의 복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인 甲에게 미친다.
- ② 甲이 乙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乙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甲과 乙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乙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③ 甲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의 허락없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는 것은 자기계약으로서 금지된다.
- ④ 甲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乙로 하였으나 甲이 乙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 丙이 甲을 乙인 줄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문 4】 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에 의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며,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다.
- ③ 한정후견개시심판에 의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며, 한정후견개시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다.
- ④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문 5】 근로계약관계와 비진의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 ②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③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 ④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영업양수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6】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혼인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②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③ 혼인무효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그 출생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하였더라도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④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고,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문 7】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참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차량 등의 3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위 충돌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중 1인이 위 범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③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가 수혈받은 경우, 수혈에 필요한 수혈액을 채혈·조작·보존·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대한적십자사와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 ④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문 8】 구분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은 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②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그 건물이 객관적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③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④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 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9】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되었다면,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이기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미치고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문10】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지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 ② 경계계약의 경우 구채무에 관한 저당권 등이 신채무에 이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구채무가 소멸함이 원칙인 경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특약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 ③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문11】 민법 제366조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 ②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어서 아직 독립된 건물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④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이라 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을 전대하여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주택임차인과는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데, 상가건물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④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문13】 친생자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생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③ 부 또는 모가 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문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 유언은 의사표시가 성립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이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문15】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기 이전 상태에서는 각 당사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대금지급청구 등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계약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배하여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은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 ③ 매수인은 이러한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목적토지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는 있지만,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④ 허가 받기 전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문16】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이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담보채무에 속하는 지연이자(지연배상)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③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문17】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고,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고, 이러한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또는 그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청구권인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승계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④ 소송물이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청구권인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승계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18】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위 등기명의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③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유류분의 비율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문19】증여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④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문20】변제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자대위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변제 또는 담보권 실행 등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될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을 대위변제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대위변제자의 구상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인 점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인 채권양도와 구별되며, 원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피대위권리의 주체인 채무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구별된다.
- ③ 대위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구상권 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기타의 권리도 취득하므로 청구권의 경합이 생기게 된다.
- ④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문21】상린관계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토지소유권을 확장 또는 제한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토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하나(단, 생활방해 금지의 경우에는 인접성을 요하지 않음),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등기하여야 하며 요역지와 승역지가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22】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며,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특정 행위에 대한 대리인, 지배인, 사원총회, 감사 등은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인 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35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문2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인 것이 원칙이다.
-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최고 없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담보책임을 배제·감경·가중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문24】 친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④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문25】 부당이득제도의 예외로서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한 비채변제의 경우 변제자는 원칙적으로 급부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은 일정한 비채변제의 경우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②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는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급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④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문26】 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②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는 물론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시효완성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문27】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사회생활규범으로서 강행되기에 이른 것으로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대통령령인 구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관습법이 배치될 경우,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 ③ 관습법과 달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 ④ 관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등이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는 사도통행권, 온천권 등이 있다.

【문2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정지조건부채권은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가족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④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문29】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보증채무에 있어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문30】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②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상대방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문31】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목적물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③ 채무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한다.
- ④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문32】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뒤에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 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③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과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매각결과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도 없다.
- ④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문33】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교회재산 총유권자의 일부인 잔류교인들으로써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총유권자들으로써 이루어진 교회에 대하여 교회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고, 교회 건물의 등기명의가 한쪽 교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서 유효하다.
- ③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 ④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문34】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3자가 채무자와 면책적채무인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면책적채무인수의 경우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문35】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양도담보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될 수 없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짐으로써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양도담보권자는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목적물이 채권 기타의 재산권인 경우에는 그 권리에 전에 필요한 요건 및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3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예외적으로도 그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된다.
- ③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 ④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문37】불법행위에서 가해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②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것을 알면서 채무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채무자의 행위가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문38】권리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토지의 정착물에는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등이 있으며, 독립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
-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④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임과 같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따라서 임대 중인 건물이 매매된 경우에 그 차임은 임대인들, 즉 그 건물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 소유기간 일수의 비율로 귀속한다.

【문39】 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자채권을 기본적 이자채권,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을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 ②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 채무자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약정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문40】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선관주의의무는 이행기가 지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부담한다.
- ③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 ④ 채권성립 후에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급부가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급부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 1】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 ① 급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에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와 같이 청구취지에 각 피고의 상호관계와 각자의 의무의 범위를 부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중첩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분할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당사자가 될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관, 규약,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보정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하고, 보정기간 경과 후에 각하명령 전에 보정하였더라도 그 흠이 보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한다.
- ④ 피고에게 소장부분이 송달된 후에 인지보정명령을 발한 경우, 원고가 그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2】 법원사무관등의 공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증인이 행하는 공증사무가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의 작성 또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법원사무관등의 공증사무는 법원이 행하는 절차에서 이루어진 법원 및 소송관계인의 행위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인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이 공증한 사항이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고 서면에 의해 일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면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통상의 공문서보다 높은 신빙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소송당사자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의하여 부여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교부신청이 들어온 경우, 증인신문조서가 변론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도 증인신문조서만의 등본을 만들어 교부한다.

【문 3】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 ②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상소심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의한다.
- ③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사물관할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일반 단독사건으로 재배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바뀌었더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 4】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달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도 그 치유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송달을 실시하거나 기일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흠은 이에 대한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 이러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만일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 상호간 또는 집주인과 하숙생 사이에서는, 인장을 교부하거나 우편물 수령의 위임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문 5】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나 이행의 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필요 없고, 본소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반소청구도 본소와 운명을 같이하여 소멸된다.
- ③ 반소장에도 소장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하나,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양 소송물이 일부만 중첩되는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반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④ 반소가 적법하면 병합심리를 하여 1개의 전부판결로써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이 번잡하게 되거나 지연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리심리를 하여 따로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각각 일부판결을 할 수도 있다.

【문 6】 자백과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고, 문서에 적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 ② 소송요건 등의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자백간주의 대상은 될 수 있다.
- ③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문 7】 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나, 이는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때에 한한다. 만일 소송물인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이 되지 않거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 ②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에게만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 그 당사자의 절차만 중단되는데 반하여, 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절차가 중단된다.
- ③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수계신청은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을 새로운 당사자 또는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수계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 신청인이 그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는 대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단을 잘못 내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진정 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문 8】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지만, 문서제출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 전에 제3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③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후 바로 한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
- ④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곧바로 증거자료가 되므로 별도로 서증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의 송달이 무효인 때에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그 송달을 받을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령 허위의 피고 주소로 제1심판결이 송달된 때에는 설령 피고가 그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항소기간은 진행될 수 없다.
- ② 항소장이 제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 송부된 때에는 당사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1심법원 도착시가 아니라 항소심법원 접수시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된다.
- ③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 ④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인이 위 보정명령에 불응하더라도 항소장은 각하할 수 없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금전의 인도, 반환시기의 도래이고, 이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 ②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자의 약정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다만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고는 반환시기 및 그 도과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익일부터,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최고 및 상당기간의 말일이 도과한 때부터,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④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다. 대주는 특약이 없어도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어도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가 가능하다.

【문11】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②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고, 이는 수단인 청구의 값이 주된 청구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소가 제기되는 경우, 소장 접수단계에서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5,000만 원을 잠정적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이다.

【문12】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정본을 송달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변론준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 ③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 ④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결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문13】 승계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의 승계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목적물의 양도 등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 결과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새 당사자로서 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소송물의 양도에는 매매·증여·채권양도 등 임의처분은 물론 민사집행법상 매각, 채권전부명령 등 법률상의 이전도 포함되고 승계취득이든 원시취득이든 관계 없다.
- ③ 승계참가의 신청은 소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에 따라 심리한 결과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승계참가의 형식은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지만 소송의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피참가인이 양도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권리승계참가인이 피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삼면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공동소송에 준하여 심리한다.

【문14】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건기록이 법원의 화재·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소송관계인이 6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대하여 소장·신청서·상소장 등의 부분 및 사건계속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신청·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③ 사건기록이 재난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 그 확인 즉시 상급법원을 통하여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을 새로 조제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법원의 잘못 등으로 그 소송서류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서류의 제출로 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문15】 증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의 신청은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 ②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증거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증거신청을 한 당사자는 통상의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증거의 채부 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이므로 언제든지 취소·변경할 수 있다.

【문16】 다음 중 민사사건에 속하지 않는 사건 유형은?

- 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② 유언의 무효
- ③ 유류분반환청구사건
- ④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문17】 보증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비용자관 반드시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해 사무, 사업의 보조,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을 말한다.
- ②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장소에서의 보증송달에서 부부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송달을 받을 동거인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해서는 보증송달을 할 수 없다.
- ④ 보증송달이 적법하면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었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지만 보증송달 후 수령대행인으로부터 본인이 장기간 부재임을 소명하여 신고해 온 경우는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18】 서증의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②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 ③ 당사자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려 할 경우 접수담당자는 가급적 이를 원본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증거목록의 서증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문서의 기재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혀야 한다.

【문19】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 ②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는데도 이를 간파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 ③ 판결선고 직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이와 동시에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소취하와 함께 소송이 종료되므로 판결정본의 송달은 필요 없다.
- ④ 판결정본은 보조참가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문20】 판결·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판결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고 결정은 개개 법관(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
- ② 판결은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거친 후 법관이 서명날인한 판결원본을 작성하여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③ 결정은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또는 서면심리와 심문을 거친 후 상당한 방법으로 재판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결정은 결정원본의 작성이 필수적이지 아니고 조서에 기재하여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21】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조참가인은 독자적인 소송관여권이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면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②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거나, 피참가인이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상소를 취하한 뒤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③ 보조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피참가인은 결석 하더라도 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 ④ 보조참가인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보조참가신청을 취할 수 있고, 참가신청을 취하함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문22】 사실조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증인신문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한 증거방법으로 이해되고 있고 실무에서는 사실조회라고 부른다.
- ② 조사할 내용이 촉탁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도 사실조회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 ③ 회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는 없으나, 당해 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닌 정식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하려면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 ④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는 관련기관이 정한 제출명령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2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구조는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허용되고,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사건은 소송사건과 그 목적 및 절차구조를 달리하므로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급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자급능력의 부족에 관하여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③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일반승계·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소송승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24】 송달료의 예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송달료가 없어 소장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할 수 없다.
- ③ 소장 접수시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아 보정명령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송달하지 않고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소송계속 중에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문25】 진정성립의 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 이 경우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공문서의 위조·변조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② 공증인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작성한 공정증서는 성질상 공문서와 같은 추정력을 가진다.
- ③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성립의 진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형식상 존재하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 ④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문26】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③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한 경우에도 미친다.

【문27】 사건기록의 편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원고측 공동소송참가는 주된 소송의 기록에 합철한다.
- ② 제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 소송기록의 보관 또는 보존법원에 그 송부를 촉탁하여 송부되어 온 제심 전 기록을 제심기록에 첨철하여야 하며, 제심소송이 종료되면 양 기록은 제1심법원에서 함께 보존한다.
- ③ 문건으로 입력할 서류는 따로 사건이 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진행 중인 관계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하고,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문28】 접수서류의 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수서류는 접수인을 날인함으로써 수리된다.
- ② 당직접수를 한 경우 각종 기간의 준수 여부나 시효중단 여부는 주무부서 접수시가 아닌 당직접수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소송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변호사·법무사 등이 제출한 소송서류로서 그 서류 자체로 제출자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에도 봉투를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④ 기일접수의 경우 주무부서 접수인을 다시 날인할 필요는 없다.

【문29】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시항고나 특별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판결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은 항고에 의하여야 한다.
- ③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하는 항고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1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도 재항고이다.
- ④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나 항고기간이 지나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에 의해 원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문30】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 ②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등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서면에 첨부된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상소심에서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해태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문31】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또는 모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공유건물의 철거청구는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 지분권의 한도 내에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③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유관계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이다.
- ④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취하 등은 공동소송인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문32】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와 국가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양 청구 중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 ③ 대지인도를 구하기 위해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양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④ 병합청구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서 합산·흡수 등의 원칙은 원고가 1개의 소장에 의해 원시적으로 여러 청구를 병합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설령 병합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더라도 별개의 소장으로 제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33】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이 집행증서인 경우 토지관할은 채무자인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관할이다.
- ②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모든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
-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한다.
- ④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이므로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해당한다.

【문34】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의 취하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확정시키는 데 반하여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실효하게 한다.
- ②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대방이 당해 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취하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때 또는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때에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한다.

【문35】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 ② 제1심에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된다.
- ③ 선정당사자는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즉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제기와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선정자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신청(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재판, 증거조사, 송달 등의 일정한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
- ② 공격방어방법은 주장과 증거신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주장에는 법규의 준부·내용·해석에 관한 의견진술을 포함하는 법률상 주장과 구체적인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진술인 사실상 주장으로 구분된다.
- ③ 사실상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는 부인, 부지, 자백, 침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부지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침묵과 마찬가지로 부인으로 추정된다.
- ④ 상대방의 위 4가지 답변태도(부인, 부지, 자백, 침묵)는 그 효과에 따라 ‘부인’과 ‘자백’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문37】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은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사건의 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 ② 전속관할을 위반한 지급명령신청은 각하해야 하지만, 법원이 전속관할의 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명령을 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지급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 ③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어 채권자에게 인지보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면 독촉절차는 실효되므로,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본안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 ④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문38】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론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복사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송기록 열람·복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부결정 권한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있다.
- ④ 2015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확정 민사판결서를 인터넷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이는 행정·특허·가사사건의 판결서에도 적용된다.

【문39】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이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복수의 피고 중 일부만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후속절차의 진행을 일단 유보한 후, 다투는 피고에 대해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다투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무변론판결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 ③ 피고가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을 촉구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④ 형성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문40】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은 20년간 자주·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다.
- ② 점유의 개시시점은 요건사실이므로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된다.
- ③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에게 국유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의 중단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오직 시효이익의 포기가 문제된다.

【문41】 발송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발송송달은, 해당 서류에 관하여 교부송달,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해당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그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피고가 소장부분을 송달받기 전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장부분을 송달하고 절차를 진행하다가 소송대리인이 사임하고 피고에게 그 이후 서류들이 송달불능될 경우에는 피고에게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발송송달이 가능하다.
- ③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그 취지를 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는 원고, 참가인 등 적극적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이상 적법한 송달을 받은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에게도 발생한다.
- ④ 발송송달을 하는 주소는 종전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곳이다. 종전 주소로 송달되었다가 주소변경신고된 주소로 송달불능된 경우, 법인의 본점으로 송달되었다가 송달불능되었고 대표이사 주소지로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종전에 한 번이라도 적법한 송달이 된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면 된다.

【문42】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비직불, 증인대동’ 취지가 기재된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된 경우라도 참여사무관등은 증인 출석확보를 위해 신청인에게 증인 명의의 여비포기서를 붙이거나 여비를 예납하도록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과태료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③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증인을 법정이나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을 명하는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별도로 송달해야 한다.
- ④ ‘증인대동’의 취지가 기재된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에 증인 명의의 여비포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하게 되므로 법원으로부터는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문43】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개의 청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지만, 그 항소인이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 ②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다.
- ③ 제1심판결 전에 불항소의 합의를 하면 제1심판결은 선고와 함께 확정되고, 제1심판결 후에 불항소의 합의를 하면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 만료시에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 ④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하여 1개의 전부판결이 선고된 경우, 본소청구에 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더라도 본소청구에 대한 판결뿐만 아니라 반소청구에 대한 판결의 확정도 차단된다.

【문44】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인도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 소유 물건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사실, 임대차종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②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의 이행보조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퇴거청구를 해야 한다.
- ④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경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문45】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가 해산되었으나 아직 등기부에 청산인의 성명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가 타인을 선임한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사람이 있는 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 되며, 소의 제기가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된다.
- ③ 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조사 결과 대리권의 흠이 발견되면 기간을 정하여 대리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을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소장각하명령을 하게 된다.
- ④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 표시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송달은 부모 중 일방에게만 하면 된다.

【문46】전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이로 소장 등을 접수한 경우에도 피고가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인 때에는 전자기록사건이므로 전자사건으로 접수하고 전자등재를 하여야 한다.
- ② 종이기록사건에서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가 항소장, 청구변경신청서, 반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더라도 인지액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전자기록화는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않는다.
- ④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문서가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증거조사를 할 때에도 전자문서 자체를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문47】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 ③ 당사자신문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정한 자리에서 결정과 기일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별도로 그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상대방 당사자의 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여비 등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문48】인지액의 환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환급사유가 되나 무변론 소각하 판결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②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취하,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가 되지만,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 ④ 상고취하의 경우 판결선고 전에 취하하면 환급사유가 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에도 환급사유가 된다.

【문4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방법’은 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을 말하고, ‘증거자료’는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을 말한다.
- ②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불법검열·감청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취득한 자료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③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일반적인 법규의 존재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외국법·지방의 조례·관습법 등을 법원이 알지 못하는 때에는 증명의 대상이 된다.

【문50】 전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특허법(제9장에 한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적용된다.
- ② 음성·영상·애니메이션·시뮬레이션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증거자료가 아니라 주장 또는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제출하여 법정 변론에 활용하려 하는 경우 기일에서 진술은 할 수 있으나 재판장 등이 미리 허가한 경우에만 사건기록에 편입할 수 있다.
- ③ 등록사용자나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서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고, 복제하게 하거나 출력한 서면을 교부할 수도 있다.
- ④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019년 5월 18일 시행

능 력 검 정 시 험

【법원사무직렬】

<제 2 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민사집행법(30문)
①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의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9. 5. 20.(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9. 5. 20.(월) 10:00 ~ 2019. 5. 22.(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9. 5. 31.(금)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30]까지 같음)

- ①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항고절차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③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별도의 집행정지처분이 필요하다.
- ④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의 기재방법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문 3】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②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며,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을 표시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해 변제충당 또는 추심한다.
- ④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문 4】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②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의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다.
- ③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의 발송 전에 진술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 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상 개별매각이 원칙이므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한 바가 없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매각하는 것이다.
- ②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매각하여야 한다.
- ③ 일괄매각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사유가 있는 부동산만 매각을 불허가 한다.
- ④ 일괄매각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문 6】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둬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공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공탁하여야 한다.
- ②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지나지 않았더라도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④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문 7】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하지 않고 임차인의 점유보조자 즉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 ②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 ③ 근저당권설정 후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증액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임차인은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도 주택인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출 수 있다.

【문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각종 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 ②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상 그 집행개시 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미 진행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다.
- ③ 임금채권 등 채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
- ④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 9】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 ② 법원이 대표이사직에 대해서만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외에 이사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 ③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기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 권한을 갖지 못한다.
- ④ 채단법인의 대표자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해임이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10】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②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③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 ④ 추심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로 인해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문11】배당절차와 관련된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필요는 없다.
- ② 집행공탁을 하면서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③ 혼합공탁이 유효하려면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 ④ 공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문12】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및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등기의 처리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 ②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전세권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취득하므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촉탁한다.

【문13】매각물건명세서 및 그 기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그 전세권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최선순위 가압류의 등기일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이다.
-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경매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 ④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매각에 의하여 말소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유치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문1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고 의사에 반하여 투자회수를 강요당하는 우선채권자와 채무자 및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②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도 1주 내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도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 ④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자는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에 한하고, 채무자와 소유자는 항고할 수 없다.

【문15】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보전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 ② 위 두 요건의 심리순서는 먼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심리하여 일응 그 존재가 소명되면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실무상으로도 통상 그와 같은 순서에 따르고 있고, 판례도 같다.
- ③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는 그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다.
- ④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문16】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공탁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나, 변제공탁의 성질은 가지지 않는다.
- ④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17】부동산경매절차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 ② 법원사무관등이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 ③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문18】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는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에 하여야 하고, 최초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의 날로 정하되, 연월일만 특정하면 된다.
- ② 위법공고를 간과하고 집행을 속행하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며,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의 누락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추완항고가 허용될 수 있다.
- ④ 매각기일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로 발송송달하면 되고, 이때의 주소는 집행기록상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한다.

【문19】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부동산가압류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결정이 등기된 경우, 그 가압류결정은 당연히무효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효인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보전신청 후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은 당연히무효로 된다.
- ③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르고 가압류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이다.
- ④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

【문20】 집행문부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집행문부여기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집행문부여의 소 승소판결은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 청구권의 형성 외에 실체적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기판력도 발생한다.
- ④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문2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에 대한 추가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 ②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 ③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 ④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문22】 집행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 ③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적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④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는 없지만,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23】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이 발생하면 비록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도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의 효과 즉,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채권자가 선의라면 전부명령이 가능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불가능하다.

【문24】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도명령신청권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 ②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에게도 미친다.
- ③ 인도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은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④ 인도명령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 외에도 매각허가절차 등에 관한 하자도 불복사유가 된다.

【문25】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고, 명시절차를 거친 때에는 그 실시법원이다.
-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가 변제 기타 사유로 인한 채무소멸을 증명하여 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채권자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문26】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즉시항고한 경우 그 항고가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그 항고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것으로 된다.
- ②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③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생긴 사유도 항고심재판에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④ 항고보증의 방법으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의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27】 부동산경매절차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중 전유 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 ③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다.

【문28】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 ②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 ③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들이 업종제한약정에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그러한 상태를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라도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문29】 금전채권에 대한 현금화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 ②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 ③ 추심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 ④ 전부명령에 대하여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30】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목적물을 타에 양도한 후에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보전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5월 18일 시행

능 력 검 정 시 험

【법원사무직렬】

<제 3 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①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의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9. 5. 20.(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9. 5. 20.(월) 10:00 ~ 2019. 5. 22.(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9. 5. 31.(금)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 1】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한, 이하 [문30]까지 같음)

- ①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다면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그 연월일은 '결정확정일'로 한다.
- 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다면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화해'로, 그 연월일은 '조서기재일'로 한다.
- ③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한다.
- ④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취소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으면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한다.

【문 2】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 ②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전부에 대하여는 열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수용기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도 부동산등기규칙 제20조 제3항의 삭제인가 또는 제25조 제3항의 폐기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 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라도 그 중 특정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등기는 지적소관청이 촉탁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등기소에 직접 위 특례법에 따른 분할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④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관청이 공유토지의 분할등기를 촉탁할 때에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문 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② 국내법인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③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문 5】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 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가압류등기를 촉탁하면서 착오로 채권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재의 경정을 촉탁할 수 있다.
- ③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관이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등기관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문 6】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결정 또는 처분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④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관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할 수 없다.

【문 7】등기부의 기록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의 성명을 기록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록한다.
- ② 부동산표시의 소재지를 기록할 때에는 행정구역 명칭 그 대로 전부 기록하여야 하는바,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기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등을 '서울', '충남' 등으로 약기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m²를 사용한다.
- ④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록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기록한다.

【문 8】 등기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정등기는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한다.
- ② 말소회복등기는 기존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기존등기의 효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 기존등기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 ③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는 등기로서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 ④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문 9】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율로 산정한 토지면적을 계산하고,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토지를 동일인과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 거래 토지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④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0】 지상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등기기록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수목의 소유로 하고,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④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로 토지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11】 다음의 등기신청 중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것은?

- 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및 해당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③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해당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④ 같은 목적과 원인으로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1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하는데, 등기목적은 ‘몰수보전’, 등기원인으로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연월일을, 등기권리자로는 ‘국’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몰수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 하하여야 한다.
- ③ 추정보전등기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목적은 ‘가압류’로 하여 촉탁하되, 검사의 집행명령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으로 기재한다.
- ④ 몰수의 등기는 검사가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촉탁하는데, 몰수보전의 등기가 마쳐진 권리에 대하여 몰수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에 저촉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13】 질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는 그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부동산등기법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문14】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에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매각 또는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관공서가 전자촉탁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이라 하더라도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한다.

【문15】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지를 지상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문16】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합유자 중 1인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도 할 수 없다.
- ③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문17】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된다.
- ②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이혼이 이루어진 때에 발생하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신탁등기를 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18】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19】 상속등기신청과 관련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문20】 등기신청을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할 때의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21】 가압류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선정당사자만 기록할 수 있다.
- ② 가압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무기등기의 방법으로 의한다.
- ③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무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중이라면 집행법원의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문22】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 ③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직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한다.
- ④ 건축사법상 건축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가 될 수 없다.

【문23】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 열거한 것은?

- ① 저당권부질권, 공동전세권, 주위토지통행권
- ② 채권담보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 ③ 근저당권부질권, 부동산점유권, 분묘기지권
- ④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부동산유치권

【문24】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지역권설정등기의 등기관리자가 될 수 있다.
- ②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되므로 지역권의 이전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 ③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토지를 일괄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해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5】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③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과 같이 가변적인 비율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 ④ 토지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문26】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원인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리자가 판결을 얻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③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27】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그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그 대상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공시제한하지 않는다.
- ② 대상등기명의인(말소사항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공시제한하지 않는다.
- ③ 문자입력방식(에로스-텍스트형태)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기부는 공시제한하지 않는다.
- ④ 공용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이 그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공시제한하지 않는다.

【문28】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미등기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있다.

【문29】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②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양도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30】다음 중 하천범상 하천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은?

- ① 지상권 ② 지역권 ③ 전세권 ④ 저당권

2019년 5월 18일 시행

능 력 검 정 시 험

【법원사무직렬】

<제 4 교시>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형법(20문), 형사소송법(30문)
------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의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9. 5. 20.(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9. 5. 20.(월) 10:00 ~ 2019. 5. 22.(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9. 5. 31.(금)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 1】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이 포함되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③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 2】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 또는 보충적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② 판례는 형법상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에 대해서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병과규정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 ③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④ 형벌만을 규정하고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률이나 명령·고시 등에 위임하여 그 보충을 필요로 하는 형벌법규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문 3】주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②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③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면서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④ 외국환관리법상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문 4】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 ② 주점 개업식 날 찾아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고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범인이 기소증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문 5】위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수 있는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단순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문 6】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보관죄만 성립할 뿐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범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사후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불법 및 책임에 의해 이미 평가되었으므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서 가장 중한 1죄로 처벌하나,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면 실제적 경합으로서 사형, 무기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 ④ 포괄일죄는 실체법상·소송법상으로 1죄이므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문 7】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는 제1매수인이 계약금만 교부한 상태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 ②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 ③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지 않고 범조경합 관계로 본다.

【문 8】 위법성조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당화된 정범의 행위에 관여한 공범은 처벌할 수 없으나, 위법하나 책임 없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 될 수 있다.
- ② 확정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 ③ 장래에 예견되는 침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다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 ④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이 조사한 바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문 9】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등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0】 형의 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되고 재판상의 가중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가중의 경우 필요적 가중과 임의적 가중이 인정된다.
- ② 외부에 대한 표시가 없어도, 처벌을 받을 내심의 의사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한다.
- ③ 작량감경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법률상 가중·감경을 한 후에는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
- ④ 작량감경의 방법은 법률상 감경의 방법에 의하고, 작량감경은 1회에 한하며, 그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문1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 ②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은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2】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고죄의 경우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 ②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전달자가 그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14】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A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A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기능 버튼을 눌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④ 소송사기는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기수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문15】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묵시적인 것이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가지게 되어도 무방하다.
- ②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 ③ 행위자 상호간에 범행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문16】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②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선고효력을 잃게 된 경우 선고유예 결정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행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7】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이므로, 재산죄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라도 재산상 이익은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장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할 뿐, 장물양도죄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 ③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 ④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장물로서의 성질은 유지되지 않는다.

【문18】 공무원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 ③ 수사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라면 이후 조사를 후회하지 않고 조사실에 계속 유치하였더라도 불법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문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②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 ③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뒤에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그 금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 ④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금액을 추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문20】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므로, 일회적 사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④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는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문 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30]까지 같음)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심문은 대기실이 부속된 법정, 심문실 또는 판사실에서 하고, 다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외의 장소에서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다.
- ③ 심문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④ 심문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사유에 집중하여 간략하게 하여야 하고, 심문기일을 속행해서는 안된다.

【문 2】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② 위 ①항의 신청은 피해자 외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도 신청권이 있다.
- ③ 피해자 등의 진술은 증인신문의 절차에 의하여 하며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3】 증거의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도 증거동의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고인이 즉시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효력이 없다.
- ② 증거동의를 피고인이 자신의 진의에 따라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③ 증거조사 도중 또는 종료 후에 전문증거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동의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된다.
- ④ 증거동의를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문 4】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정인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감정인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보고만을 할 수 있고, 구술에 의한 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감정유치는 보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③ 감정유치의 경우 감정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구속으로 간주된다.
- ④ 2014. 4. 1. 구속되어 5. 1. 감정유치기간이 시작되었고 5. 20. 종료되어 6. 30.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감정유치기간은 21일이고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총 90일이다.

【문 5】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되므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있거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어 방어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④ 공판절차의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구속기간(2개월)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 6】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한다.
- ② 항소제기가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공판절차에서 선고하여야 한다.
- ④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여 다시 정한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 있다.

【문 7】 구속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구속취소 결정을 함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거나 감정을 할 수 있다.
- ③ 구속취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는 보석의 경우와 같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 8】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③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물건을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문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다.
-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으로 한다. 특히 구법보다 신법이 가벼운 경우에는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문10】 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
- ② 구속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 구속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하지만, 벌금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구속피고인을 석방할 수 없다.
- ③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공소기각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그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문11】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약식절차에서 공소장일본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은 약식명령을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검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가 가능하다.
-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문12】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② 공소기간 또는 변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③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 ④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13】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 한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나 공판기일 외에 증인신문 또는 검증절차는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있었던 소송절차의 존부나 적법성, 피고인 등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공판조서가 무효이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14】 형사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상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의 판결 등을 받은 본인만 해당하므로, 본인이 보상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보상의 결정 및 청구기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해서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문15】 공소의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에 한해서만 법원이 심판한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물수나 추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에 관계없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개의 범죄사실 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과 상관없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의 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16】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③ 구속영장 없이 13일간의 불법구속 가운데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에 의하여 자백을 한 후 검사에게 동일한 자백을 한 경우 경찰조사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문17】 항소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법원은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후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이다.
- ③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18】 성명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모용자 乙은 피고인이 아니고 모용자 甲만 피고인이 된다.
- ②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고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고, 공소장을 정정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 밝혀졌으나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결과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이에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甲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

【문19】 소년형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범의 경우에는 구속사유를 구비한 경우에도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속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소년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20】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는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문21】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②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새롭게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합의부 구성원 중 일부가 바뀐 경우 판결선고만을 행하는 때에는 공판절차의 갱신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증거조사는 상당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문22】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므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 ②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부착명령 청구서 부분을 송달하고,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한다.
- ③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합의부 관할이지만, 형사단독 관할인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도중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단독사건으로 배당한 후 결정으로 합의부로 이송한다.
- ④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문23】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당해 법판에게 신청한다.
- ② 기피신청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신청권이 있다.
- ③ 구속사건의 경우에 기피신청이 있으면 간이기각결정(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의 소송절차는 정지되고,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도 산입되지 않는다.
- ④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된 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문24】 종국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직권조사를 한 결과 피고사건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직권조사를 한 결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직권조사를 한 결과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직권조사를 한 결과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25】사건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② ①에서 ‘동급법원’이란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동급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은 동급법원에 해당한다.
-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합의부로 이송한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문26】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진술증거는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 않고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문27】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서 판결선고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 관할이다.
- ③ 치료감호는 공소제기와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 ④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나 상소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나 상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문28】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재정신청 심리에 필요하여 실시한 증거조사와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 ③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결정이 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 ④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그와 같은 잘못을 다룰 수 있다.

【문29】공판준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의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공소장부분이 송달되기도 전에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하며, 위 유예기간은 피고인이 이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문30】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긴급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검사는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